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2016년 7~8월 노인복지센터 운영보조금 교부(행복e-음 연계)**

2016년 7~8월 노인복지센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.

가. 교부금액 : 금145,003,520원(금일억사천오백만삼천오백이십원)

나. 교부대상 : 도곡로 27길 27 역삼노인복지센터외 2개소

다. 교부내역

(단위:원)

시 설 명	교 부 내 역					
	예 산 액(A)	기 지급액(B)	금회지급액(C)	잔 액 (A-B-C)	지급계좌	예금주
합 계	1,086,575,000	546,125,170	145,003,520	395,446,310		
역삼노인 복지센터	351,177,000	187,864,270	48,657,000	114,655,730	**** *****	**** ****
압구정노인 복지센터	329,362,000	168,517,260	45,887,220	114,957,520	**** *****	*****
대치노인 복지센터	347,812,000	173,512,660	50,459,300	123,840,040	**** *****	**** ****
학수정노인 복지센터	58,224,000	16,230,980	0	41,993,020		

라. 교부방법 : 각 복지센터의 행복e-음을 통한 청구에 의거 e-호조와 연계, 강남구 지출원이 무통장 입금

마. 예산과목 : 노인복지과, 노인복지증진,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, 노인복지센터운영, 민간이전(307), 민간위탁금(05)

[교부조건]

- 1)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- 2)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,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연도 말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3) 이 보조금의 집행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부담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- 4) 이 보조금의 집행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.

